

입법예고

농업·농촌 공익기능 증진
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
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2024. 12.

농림축산식품부
(공익직불정책과)

1. 개정이유

‘25년 정부 예산안 편성 결과,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및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의 지급상한이 확대되고,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이 최대 5회만 지급하는 방식에서, 6회째부터 지급단가 및 지급상한을 달리하여 계속 지급(친환경축산 지속직불)하는 방식으로 지급 횟수가 확대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

또한, 공익직불법 법률 개정으로 상향 입법된 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및 공익직불 통합관리시스템 운영에 관한 조항을 시행령에서 삭제하고자 하는 것임

2. 주요내용

가.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의 지급 기준 변경(안 제22조제2항 개정)

나.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의 지급 기준 변경(안 제29조제2항 개정 및 제3항 신설)

다. 상향 입법 조항 삭제(안 제53조제2항 및 제60조제1항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없음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 별첨

농업·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농업·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2조제2항 중 “5만제곱미터”를 “30만제곱미터”로 한다.

제29조제2항 중 “지급대상자에 대해 1회당 3천만원으로 하고, 지급횟수는 총 5회로 한다.”를 “지급대상자당 총5회까지 1회당 5천만원으로 한다.”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은 계속하여 지급하는 경우 6회째부터는 제1항에 따른 지급단가 및 제2항에 따른 지급금액의 상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.

제53조제2항을 삭제한다.

제60조제1항을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53조제2항 및 제6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22조(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의 지급기준) ① (생략) ②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의 지급금액은 제1항에 따른 지급단가에 친환경농업 이행면적을 곱하여 산출하되, 지급면적의 상한은 지급대상자당 <u>5만제곱미터</u> 로 한다. ③·④ (생략)	제22조(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의 지급기준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----- ----- <u>30만제곱미터</u> -----. ③·④ (현행과 같음)
제29조(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의 지급기준) ① (생략) ②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의 지급금액은 제1항에 따른 지급단가에 친환경축산물의 생산량을 곱하여 산출하되, 그 지급금액의 상한은 <u>지급대상자에 대해 1회당 3천만원으로 하고, 지급횟수는 총 5회로 한다.</u> <u><신 설></u>	제29조(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의 지급기준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----- ----- <u>지급대상자당 총5회</u> <u>까지 1회당 5천만원으로 한다.</u> ③ <u>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은 계속하여 지급하는 경우 6회째부터는 제1항에 따른 지급단가 및 제2항에 따른 지급금액의 상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.</u>
제53조(심의위원회의 회의) ①	제53조(심의위원회의 회의) ①

(생 략)

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1회 개최되는 정기회의와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개최되는 수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.

③·④ (생 략)

제60조(정보화 및 자료제공의 요청 등)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시행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자정보시스템(이하 “공익직접지불제도 관리시스템”이라 한다)을 구축·운영할 수 있다.

② ~ ④ (생 략)

(현행과 같음)

② <삭 제>

③·④ (현행과 같음)

제60조(정보화 및 자료제공의 요청 등) ① <삭 제>

② ~ ④ (현행과 같음)